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8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민형배 · 김문수 · 이성운
양부남 · 이개호 · 안도걸
조인철 · 김우영 · 정준호
문정복 · 최혁진 · 정진욱
조계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탈퇴 경로를 찾기 어려워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플랫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만적·공격적 인터페이스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뿐, 탈퇴·해지·동의철회와 관련된 선택항목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한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

입하고, 구매취소·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때 위약금·수수료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조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란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약해지”를 “계약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계약체결”을 각각 “계약체결, 정보제공 동의”로, “해지”를 각각 “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재화등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방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를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이유로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회원탈퇴 등을 하는 경우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그 해지 또는 탈퇴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청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4조의3,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u> ”란 연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신 설>

5. (생 략)

② (생 략)

-----계약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

가. -----
--계약체결, 정보제공 동
의-----
-----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

나. -----
--계약체결, 정보제공 동
의-----

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

다. 재화등의 구매취소, 회원
탈퇴, 계약해지, 정보제공
동의의 철회 등에 관한 선
택항목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방법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신설>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제8조제4항

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이

유로 소비자가 유료 정기결제

등 계속적 거래계약의 해지 또

는 회원탈퇴 등을 하는 경우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그 해지 또는 탈퇴 등을 이유

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비용을

	<u>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제6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u>제27조제2항</u> ,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1. ----- ----- ----- ----- ----- ----- ----- ----- ----- ----- -----<u>제24조</u> <u>의3</u>, <u>제27조제2항</u>-----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